

예산총칙

2014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338,400,531 | 10,152,016 |
| 일반회계 | 311,962,316 | 9,358,869 |
| 특별회계 | 26,438,215 | 793,146 |
| 기타특별회계 | 26,438,215 | 793,146 |
| 상수도사업 | 1,554,333 | 46,630 |
| 하수도사업 | 1,006,712 | 30,201 |
| 수질개선 | 4,982,708 | 149,481 |
|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| 457,525 | 13,726 |
| 의료급여기금 | 576,733 | 17,302 |
|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| 614,390 | 18,432 |
| 소득특화사업 | 5,648,947 | 169,468 |
| 농공단지조성사업 | 303,962 | 9,119 |
| 공영개발사업 | 172,951 | 5,189 |
|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 | 11,119,954 | 333,599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421,757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3. 재해대책 및 복구비